

장내·장외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

(제4-71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거래대상	거래유형	매수(1)	매도(2)	순포지션(1-2)	비고
신 규						
누 계						
합 계						

기재상의 주의

- 1) 거래대상은 통화, 증권, 금리, 실물자산 등으로 구분한다.
- 2) 거래유형은 선물, 옵션, 스왑 등으로 구분한다.
- 3) 신규는 당해 계약을, 누계는 신규계약을 포함한 계약누계를, 합계는 매수·매도·순포지션 누계의 합을 각각 기재한다.
- 4) 비고란에는 장내 또는 장외로 구분하여 기재하며,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승수효과(leverage)를 함께 기재한다.
- 5) 스왑의 경우 매수 및 매도의 구분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.